

만약 귀하가 미국에서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했다면

집단소송의 화해가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주) (이하 “아시아나”)과 (주)대한항공 (이하 “대한항공”)이 함께 미국과 대한민국 (이하 “한국”) 사이를 운행하는 노선의 항공 여객 탑승권에 대한 가격을 담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한항공과의 소송화해가 제안되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이하 “피고들”)는 이 소송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화해 집단의 구성원인가요?

본 집단소송의 구성원에는 아시아나 또는 대한항공의 탑승권을 적어도 하나 이상 구입한 개인들과 사업체들이 포함됩니다. 탑승권은 미국 내에서 구입한 것에 한하며 다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00년 1월 1일에서 2007년 8월 1일 사이에 구입한

- 미국발 한국행 노선 또는
- 한국발 미국행 노선의 탑승권.

화해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항공은 3천9백만 달러의 현금과 추후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여행 쿠폰 2천6백만 달러로 구성된 총 6천5백만 달러의 화해 기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귀하께 지급되는 혜택은 귀하가 구입하신 탑승권의 총 달러 금액과 유효 청구전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화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해 혜택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탑승권 구입에 대한 증빙 기록을 보관하시고 아래 웹사이트를 확인해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다른 권리.

귀하가 본 화해에 의해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화해 집단에서 제외시킬 것을 서면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화해 집단에서 귀하를 제외시킬 수 있는 마감일은 **2013년 10월 25일**까지입니다. 귀하가 화해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 본 화해와 관련된 일체의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귀하가 화해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 **2013년 10월 25일**까지 화해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상세한 집단 소송 공지는 귀하를 화해 집단에서 제외하는 방법 또는 이 화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화해 승인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2013년 12월 2일**에 심리를 개최합니다. 법원은 또한 집단소송 변호인 비용, 소송 당사자 대표 재정, 비용 및 경비가 화해 기금에서 지급될 것인지 여부도 고려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인은 귀하 자신의 비용으로 심리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 공지 및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